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난임치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무 제한 등 〉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08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난임치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등의 제한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4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로 인해 동료 및 상사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5.1%로 높게 나왔는데, 대부분 잦은 병원 방문으로 스스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사회적 위축감과 난임치료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

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

Ⅲ. 검토의견

1. 난임치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등의 제한

개정안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고,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는 한편,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제4항 및 제74조제5항·제7항·제9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생략)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u>임산부와 18세 미만자</u> 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u>임산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및 18세 미만자</u>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난임치료 중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④
(생 략)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및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및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 -----

-----.

⑧ (현행과 같음)

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대상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이고, 시간외근로 및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대상은 임신 중 근로자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임신 중 근로자임.

개정안 제70조 및 제74조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①

1)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생 략)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생 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④(생 략)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② 시간외근무를 금지하고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허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가 일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음.

[표] 야간근로 등 제한 대상 현행법·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야간근로	· 임신부와 18세 미만자	· 임신부와 18세 미만자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 임신 중 근로자	· 임신 중 근로자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 임신 중 근로자	· 임신 중 근로자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다만,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난임치료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 및 수

인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법법은 야간근로·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무 등의 제한 대상을 임신부, 임신 중 근로자 등 ‘여성’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로 명시하고 ‘남성’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난임은 그 범위가 넓고 증상이 다양하여 임신 등과 달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제도의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시간외 근로금지 등 보다는 난임치료휴가 부여 및 급여지원 등 치료에 필요한 지원²⁾을 하는 것이 타당(직접적인 치료지원은 복지부 담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539

2) 법 개정('25. 2. 23. 시행)을 통해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